경제혁신 3개년 계획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참고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산업부 통상법무과 신정훈 과장(044-203-5770), 조은정 사무관(044-203-5776)

WTO,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구성 완료 (2. 8)

□ 일본 정부가 '15.5월 WTO에 제소한 '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'에 대한 분쟁의 패널 위원 3인이 선정되었음. (2.8, 스위스 제네바 시간)

○ 패널 의장은 다수 WTO 분쟁 패널로 활동한 통상관료출신 인사로, 패널 위원 2인은 식품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됨.

* 패널 의장 및 위원 주요 이력
 - William Ehlers (우루과이) : 지구환경기금(GEF) 이사회 의장, 前 우루과이 외교부차관, 다수 WTO 분쟁 패널 역임(호주 사과, EC Continued Suspension, 석면 사건 등)
 - Ezzedine Boutrif (튀니지/프랑스) : 식품안전분야 컨설턴트, 前 FAO/튀니지 정부 식품 안전 및 소비자보호 분야 근무, 식품과학 박사
 - Naing Oo Minn(싱가포르) : 변호사, 국제 중재 전문가, WTO 필리핀 주세 분쟁 패널 역임

○ '15.9월 패널 설치 이후,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을 선정하는 당사국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WTO 규정*에 따라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을 구성함.

* WTO 분쟁해결절차 규정(DSU) 8.7조: 패널설치 후 20일 이내 패널 구성에 합의가 없을 경우, 일방 당사국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직권 구성 가능

□ 패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,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진행될 예정인바,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임.

*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WTO 규정상 약 1년이 소요되나,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에 있음.

첨부: WTO 분쟁해결절차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신정훈 과장(☎ 044-203-57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MOTIE
ISTRY OF
DE, INDUSTRY & ENERGY

첨부 WTO 분쟁해결 절차도

